# 법완공보

2019. 6. 15. SAT

# 목 차

규칙	847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85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5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5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861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863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65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힌 규칙 일부개정규칙
	8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869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신법령 목록	875	
인사	878	
공지사항	884	

## ● 규칙

##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4호 2019. 6. 4. 공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4(간사)

-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유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관연수에 관한 장단기 기본계획
-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6(회의)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7(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를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판사 연수계획"을 "법관연수계획"으로 각 변경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개 정 안

##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 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8조의4(간사)

-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신 설〉

## 개 정 안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관연수에 관한 장·단기 기본계획
-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 제28조의6(회의)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 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 다
-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 명한다.
-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 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연수계획 등)

- ①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u>판사 연수계획</u>을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② (생 략)
- ③ 〈신 설〉

#### 개 정 안

## 제28조의7(위임규정)

<u>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u> 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제29조(연수계획 등)

- ① ---- <u>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 <u>법관연수계획</u> -----
- ② (현행과 같음)
-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5호 2019, 6, 4,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중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명	심의관	과명	분 장 사 무
사 법 등 기 국	사법등기		1.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 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탁 및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포함)에 관한 사항

별표 4의1 중 서울북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 더 더 기 HLHI ()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별표 4의2 \* (2)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국명	심 의 관	과명	분 장 사 무		
사법등기국	사 법 등 기		1. (생 략) 2. (생 략) 3. 공탁 및 상업등기(민법법인, <u>특수법인</u> , <u>선박등기 포함</u> )에 관한 사항		
L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별표 4의1]

##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L  상 생략)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이하 생략)				

## [별표 4의2]

## 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비고
ı		(생 략)	

#### ※ (1) (생략)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선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및 등기국 등기운영과는 각 소속국의 관장사무 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 (3) ~ (5) (생략)

## 개 정 안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국명	심 의 관	과명	분 장 사 무		
사법등기기	사 법 등 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특수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포함)		
국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별표 4의1]

##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0)	상 생략)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이하 생략)				

## [별표 4의2]

## 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비고
	(현행과 같음)	

<b>※</b> (1)	(연행과	같음)
--------------	------	-----

2)
 (3) ~ (5) (현행과 같음)

제1570호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6호 2019. 6. 4.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감봉 및 견책처분"을 "징계처분"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을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같은 조 제9항 중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을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을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휴직"을 "정직 또는 휴직"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70호

11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제7조(정근수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 대상기간 중 감봉 및 견책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 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 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및 「공무 원보수규정 . 제15조제1호 · 제4호에 따 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 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 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 = 제1항의정근수당액  $\times$   $\frac{실제 근무한기간(개월)}{6(개월)}$ 

- ③「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감봉 및 휴직 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 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생 략)

## 제9조(가족수당)

① · ② (생 략)

#### 개 정 안

/소(성근수당) ① (연행과 같음) ②	
④ <u>징</u> 계처분	
	•
③	
<u>정</u> 직, 감	-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	나
<u> </u>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가족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아

#### 현 행

- ③ (생략)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 2 ~ 5 (생략)
- ④ ~ ⑧ (생 략)
- ③ <u>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u>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①·① (생 략)

####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 ① ~ ③ (생 략)
-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 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 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 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 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 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 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 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 ⑤ <u>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u>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장애인
2 ~ 5 (현행과 같음)
④ ~ ® (현행과 같음)
<ul><li>⑨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li></ul>
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 ⑩·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⑤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
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u>, ev , ,                               </u>

## ⑥ (생략)

제11조(관리업무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u>휴직</u>(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생략)

	<b>711</b>	0			
⑥ (현행과 김	음)				
제11조(관리업두	무수당)	1	 		
			  7-l 7 l	тъ	ゔヮ゚
			 <u> 성식</u> 	또는	<u> 유식</u> 
② (현행과 길	남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휴직기간 중			
구분	정직기간 중	감봉기간 중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 <i>%</i>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 ◎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7호 2019. 6. 4. 공포)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및 서울시내 각급법원"을 "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1570호

- ① (생 략)
-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u>일부</u> 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당직사령)

- ① (생 략)
- ② 당직사령은 <u>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및</u> <u>서울시내 각급법원</u>에 근무하는 4급 일 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개 성 안
 데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일부</u>
<u>또는 전부</u> .
데15조(당직사령)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u>
법원

##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8호 2019. 6. 4. 공포)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제16조"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 「공탁법」 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제12 조와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발 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략)

〈신 설〉

## 제70조(사용자등록)

- ① · ② (생략)
-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개 정 안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u>「상업등기법」제 16조</u>
. (Alala al 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
<u>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u>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
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
<u>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0조(사용자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업등기법」 제16조</u>

④ (현행과 같음)

##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9호 2019. 6. 4.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서울북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서울북부		등기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 구, 도봉구, 강북구, 노 원구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c< td=""><td>기상 생략〉</td><td></td></c<>	기상 생략〉		
서울 북부		북부	<u>〈신</u> <u>서울특</u> 별시	<u>설〉</u>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		동대문구, 성북구	
		<u>도봉</u>		도봉구, 강북구	
〈이하 생략〉					

## 개 정 안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ㆍ도명	시·구·군명	
		<c< td=""><td>기상 생략〉</td><td></td></c<>	기상 생략〉		
서울 북부		등기국	<u>서울특</u> <u>별시</u>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삭 제〉					
		<u>〈삭 제〉</u>			
〈이하 생략〉					

##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50호 2019. 6. 4.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서울북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명	번 호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601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별표 2]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명	번 호
〈이상 생략〉	
<u>〈신 설〉</u>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	기소 2602
<u>"</u> 동대문	등기소 <u>2641</u>
<u>″</u> 도봉등	<u>기소</u> <u>2643</u>
〈이하 생략〉	

## 개 정 안

## [별표 2]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명	번 호
〈이상 생략〉	
<u>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u>	<u>2601</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이하 생략〉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851호 2019, 6, 4, 공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8인</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u>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u> 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 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 인을 위원으로 한다.
- ③ ~ ④ (생 략)

	게 경	긴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u>7</u>	'인		
	·				
②	- <u>법원행</u> 7	정처 차장	, 기획	조정	실
<u>장,</u> 사법지	]원실장,	행정관리	실장	및	윤
리감사관					
		<b>.</b>			
③ ~ ④ (현현	행과 같음	-)			

##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52호 2019, 6, 4,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일반승진시험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을 "일반승진시험"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2조의2제1항제2호"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관내 법원 소속 합격자"를 "해당 관내 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특허법원 소속 합격자"를 "특허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하되. 같은 조 제6항을 제41조제8항으로 한다.

제84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 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85조제11항 단서 중 "난자"를 "여성공무원은 난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41조제8항, 제41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검정시험 과목면제를 받은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신설 교육과정(7급승진후보자과정) 중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현 행

##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 승진시험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 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

- ② (생략)
-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u>각 과목 만점의</u>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제11조제 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은 <u>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u>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

# 안 개 정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승진시험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

센트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 ③ (생 략)

-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 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 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 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생략)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 ② (생 략)

- ③ 고등법원장은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및 해당 관내 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 장이 각 작성한다.
- ④·⑤ (생 략)

개 정 안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u>제1호</u>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법원서기 및 등기</u>
<u>서기</u>
<u>해당 관내 법원 소속 법원</u>
<u>서기 및 등기서기 특허법원</u>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
<u> </u>
•

(4)·(5)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 1. ~ 5. (생 략)
- 6.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 ⑦ (생 략)

〈신 설〉

## 제41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등)

-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를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고 한 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응시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난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 중에서 시험 예 정일 현재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위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되, 매 시험실시 연도마다 달리 정할 수 있 다.
- ③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기시험은 제45조제4항을 준용한다.

#### 개 정 안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 ① ~ ⑦ (현행과 같음)
- (8)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삭 제〉

- ④ 능력검정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제60조제1항 별표 6의1에 규정된 7급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과 같다.
- ⑤ 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⑥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 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 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 용추천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능력검정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8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승인하여야한다.

1.~11. (생략)

<u>〈신 설〉</u>

## 개 정 안

제84조(공가)	

1.~11. (현행과 같음)

12.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할 때

## 제85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

- 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u>난자</u>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①·③ (생 략)

-II TJ	$\sim$
/H 🔼	_
개 정	ဝု

제85 <b>조(특별휴가)</b> ① ~ ⑩ (현행과 같음)
(ii)
<u>여성공무원은 난자</u>
··
①·③ (현행과 같음)

## **신법령 목록** (2019. 5. 16. ~ 5.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가게고하기 기하여 시나세기에를 즐겁기	2040 5 20	40505	0
법률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2019. 5. 22	19507	3
【조약】				
조약제2414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 합식량농업기구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2019. 5. 17	19504	4
조약제2415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 제에 관한 협정	2019. 5. 20	19505	3
조약제24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 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	6
조약제24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019. 5. 29	19512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766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5. 21	19506	4
대통령령제297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769호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령	"	"	7
대통령령제29770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77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772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9773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977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9775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	"	"	16

32

대통령령제2977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9. 5. 21	19506	17
대통령령제29777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977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977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78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781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978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978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9784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978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978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978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5. 28	19511	4
대통령령제2978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9789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9790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979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979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97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9794호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9795호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796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총리령】				
총리령제1539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2019. 5. 20	19505	16
[부령]				
기획재정부령제734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2019. 5. 16	19503	4

행정안전부령제119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2019. 5. 17	19504	18
환경부령제77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19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4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5. 20	19505	1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5. 21	19506	41
중소벤처기업부령제15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43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5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5. 22	19507	3
환경부령제80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2019. 5. 24	19509	4
법무부령제951호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	2019. 5. 28	19511	28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보건복지부령제6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중정정	"	"	48
국토교통부령제62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i>II</i>	"	49
통일부령제10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5. 29	19512	8
해양수산부령제340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방부령제985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5. 30	19513	4
기획재정부령제735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구칙 일부개정령	2019. 5. 31	19514	6
행정안전부령제12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5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보건복지부령제62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624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해양수산부령제341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12

# •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0호

2019. 5. 1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sup>7</sup> 가. 지	직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영민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5.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2호

2019. 5.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가.	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2019. 5.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저	106호

2019. 5.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	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황성미	"
			(2019. 6. 20.자)
2. 휴 직			
가. 지방법	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정욱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7.부터 2019. 8. 16.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배동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8. 19.까지 휴직을 명함
나. 고등법위	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20. 8. 8.까지 휴직을 명함
	"	임혜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7,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제1570호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허상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다. 고등법원	년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희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부터 2019.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라. 지방법원	<u> </u>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8. 16.까지 휴직을 명함
	"	김진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10. 31.까지 휴직을 명함
	"	문종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	송인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20.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	윤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7. 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영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8. 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봉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20.부터 2019.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 건	<i>u</i>
	u	강문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20. 1. 31.까지 휴직을 명함
	"	류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박나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20.부터 2020.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20.부터 2019.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진재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6. 24.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민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8. 2.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이종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20.부터 2019. 8. 1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선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8. 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채성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2.부터 2019. 8. 18.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혜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19. 9. 6.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정현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0.부터 2020. 6. 9.까지 휴직을 명함
3. 복 직	whal		
가.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우석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6. 11.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1.부터 2019. 8. 4.까지 휴직을 명함
	"	황성광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9. 6. 10.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서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6. 25.자)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6. 1.자)
4. 복 귀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노유경	복귀를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6. 1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7호

소속 및 직위

항

2019. 5. 29.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투	그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기상	2019. 6. 3.부터 2019. 6.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성 명

# ● 공지사항

#### ◎ 5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5월분 법률도서(318책), 일반도서(6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2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 법률도서

####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전문 분야의 주요 쟁점 (도산실무/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9	
(2018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특정주제연수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론/ 재판과 법경제학/ 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9	
慶熙法學 v.54-1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9	
공직법 입문: 법치와 공직 / 권순현	박영사	2018	
東亞法學 v.82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19	
법과 기업연구 v.8-3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과 政策 v.25−1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9	
法學 v.60-1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研究 v.22−1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研究 v.29-1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생활과 법률 / 오경식	유원북스	2019	
成均館法學 v.31-1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法學研究院	2019	
一鑑法學 v.42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자손의 교령위반[子孫違犯敎令]'에 관한 역사적 고찰: 미시법사학적 시도 / 손가홍	서경문화사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韓國法學院	2019	
淸硏論叢 v.15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9	
判例研究 v.30 / 부산판례연구회	釜山判例研究會	2019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8	
漢陽法學 v.65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9	
スタンダード法学 / 川端敏朗	芦書房	2018	
(ポケット版)実用六法 / コンデックス情報研究所	成美堂出版	2018	
	有斐閣	2017	
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ニー	有斐閣	2018	
論究ジュリスト v.25 / 有斐閣	有斐閣	2018	
論究ジュリスト v.26 / 有斐閣	有斐閣	2018	
論究ジュリスト v.27 / 有斐閣	有斐閣	2018	
論理学と法学の架橋:ファインバーグ論文選 / Feinberg, Joel	東信堂	2018	
法多元主義: 交錯する国家法と非国家法 / 浅野有紀	弘文堂	2018	
法学部 ロースクール 司法研修所で学ぶ法律知識: 主要10法と法的思考のエッセンス / 品川皓亮	ダイヤモンド社	2018	
法學新報 v.125-6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9	
司法アクセスの普遍化の動向 / 大村雅彦	中央大学出版部	2018	
(有斐閣)判例六法Professional 01: 公法·刑事法·社会法(社会保障·厚生法編)·条約/有斐閣	有斐閣	2018	
(有斐閣)判例六法Professional 02: 民事法・社会法(労働法編)・産業法 / 有斐閣	有斐閣	2018	
(有斐閣)判例六法Professional別冊 / 有斐閣	有斐閣	2018	
重要判例解說 v. 2018 / 有斐閣	有斐閣	2019	
判例時報總索引 v.2018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19	
Harvard law review v.132-5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9	
Michigan law review v.117-4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9	
Michigan law review v.117-5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7: Verwaltungsrecht / Johlen, Heribert Andreae, Jacob von	C.H. Beck	2018	
(The) law quarterly review v.135-1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19	
(The) modern law review v.82-2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9	
Washington law review v.93-4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2019	

#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결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1919-2019 / 한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8	
ミュンスター法学者列伝: 中央大学・ミュンスター大学交流30周年記念 / Hoeren, Thomas	中央大学出版部	2018	

###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법연구 v.33-1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9	
(김명수의) 사회보험법: 공인노무사 시험 / 김명수	중앙경제	2018	
노동정책연구 v.2019-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방송법연구 / 권오상	法文社	2019	
稅務와 會計 研究 v.8−1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19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2018	
(理智) 상표법 판례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일감 부동산법학 v.18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9	
전기사용 · 공급 · 변경 · 해지: 분쟁시 법률적해법과 판례 / 한상현	법문북스	2019	
租稅學術論集 v.35-1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19	
(준)특허법 / 박형준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평석 / 에이펙스	박영사	2018	
지식재산연구 v.14-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지적재산소송실무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청) 상표법 판례: 2019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 김세진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협동조합 설립과 변경등기실무 / 변강림	백영사	2018	
(そうだったのか!)組織再編条文の読み方 / 中島礼子	中央経済社	2018	
なくせ!じん肺・アスベスト被害: 法廷内外における闘いの軌跡: 山下登司夫弁護士追悼論集 / 山下登司夫	日本評論社	2018	
ねこの法律とお金 / 渋谷寛	廣済堂出版	2018	
インドネシアのビジネス法務 /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有斐閣	2018	
(改正最新)勞動基準法がすっきりわかる本 / 多田智子	ソーテック社	2018	
(大学生が知っておきたい)消費生活と法律 / 細川幸一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8	
都市計画の裁判的統制: ドイツ行政裁判所による地区詳細計画の審査に関する研究 / 湊二郎	日本評論社	2018	
法人税の理論と實務 / 山本守之	中央經濟社	2018	
(事例から考える)租税法解釈のあり方 / 山本守之	中央経済社	2018	
(事業者必携 入門図解最新)はじめての金融商品取引法 / 奈良恒則	三修社	2018	
収益認識の税務: 法人税法から法人税基本通達まで / 藤曲武美	中央経済社	2018	
勝利する企業法務: 法務: 法務"戦術"はゴールから逆算せよ!: 実践的弁護士活用法 / 湊総合法律事務所	第一法規	2018	
(新)判例ハンドブック情報法 / 宍戸常寿	日本評論社	2018	
年報知的財産法 v.2018 / 高林龍 三村量一 竹中俊子	日本評論社	2018	
著作權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9	
租稅研究 v.2019-3 / 日本租稅研究協	日本租稅研究協會	2019	
脱稅と制判 / 佐藤英明	弘文堂	2018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44-4 /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Trsteens of Boston University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2018	

2019년 6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mployment Law / Carlson, Richard	Wolters Kluwer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patentgerichts v.55 / Germany. Bundespatentgericht	Carl Heymanns	2018	
Hanyang journal of law v.9 /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2019	
Patent court decisions v.4 / Patent court of korea	Patent court of korea	2018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61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8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60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8	

#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U통상법 / 박덕영	박영사	20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2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9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6권 / 석광현	博英社	2019	
북한투자법제해설 / 최재웅 (유한) 바른 북한투자팀	박영사	2018	
외국사법제도연구. 24: 각국의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	
중재연구 v.29−1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9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 항공법규: 개정분법적용: 21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 / [세화] 편집부	세화	2019	
(ひと目でわかる)外國人の入國・在留案内: 外國人の在留資格一覽 / 出入國管理關係法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8	
國際法入門: 逆から學ぶ / 山形英郎	法律文化社	2018	
國際私法 / 中西康	有斐閣	2018	
國際私法年報 v.20 / 國際私法學會	信山社	2019	
東京裁判で真実は裁かれたのか?: パール判事の日本無罪論〈判決書第4部〉を現代に問う / 都築陽太郎	飛鳥新社	2018	
東京裁判「神話」の解体: パル´レーリンク´ウェブ三判事の相克 / Cohen, David	筑摩書房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弁護士による)宇宙ビジネスガイド: New Spaceの潮流と変わりゆく法 / 第一東京弁護士会	同文舘出版	2018	
北極国際法秩序の展望: 科学・環境・海洋 / 稲垣治	東信堂	2018	
(新)国際売買契約ハンドブック / 住友商事株式会社法務部	有斐閣	2018	
英国のEU離脱とEUの未来 / 須網隆夫	日本評論社	2018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v.27 / 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8	
戦争・平和・国際組織: 歴史的に考える / 武田昌之	東海大学出版部	2018	
Cheshire, North & Fawcett private international law / Torremans, Paul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24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9	
EU customs law / Lyons, Timothy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European law review v.2019-1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9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United States courts / Born, Gary B	Wolters Kluwer	201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8-4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8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8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8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9-1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9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19-1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9	

#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등심사기준: 차별금지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중심으로 / 전은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반적 평등원칙 심사: 최근의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이지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 / 신주영	푸른들녘	2018	

####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57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9	
(신)경찰행정법입문 / 홍정선	박영사	2019	
土地補償法研究 v.19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9	
행정법 / 하명호	박영사	2019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 김남철	박영사	2018	
행정법원론. 상 / 홍정선	박영사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ピンポイント)行政法 /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会	三省堂	2018	
過料と不文の原則 / 須藤陽子	法律文化社	2018	
国会の立法権と地方自治:憲法・地方自治法・自治基本条例 / 西尾勝	公人の友社	2018	
法治行政論 / 高木光	弘文堂	2018	
(新) 情報公開法の逐條解說: 行政機關情報公開法・獨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 / 宇賀克也	有斐閣	2018	
行政法 / 高橋滋	弘文堂	2018	
行政法判例集. Ⅱ: 救濟法 / 大橋洋一	有斐閣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 v.159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 v.160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19-1 / L.G.D.J	L.G.D.J	2019	

#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2018. 12 / 한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	
矯正硏究 v.82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9	
네덜란드 형사사법체계 / 송문호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새로쓴) 형법각론 / 김일수	박영사	2018	
(새로쓴) 형법충론 / 김일수	박영사	201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1~2017: 2018.12 / 한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	
刑事法研究 v.78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9	
サラリーマン´ 刑務所に行く!: 実録!ムショで図太く生きる奴らの悲喜こもごも / 影野臣直	三栄書房	2018	
(講義)刑法学·総論 / 井田良	有斐閣	2018	
緊急避難の理論とアクチュアリティ / 深町晋也	弘文堂	2018	
犯罪加害者と表現の自由: 「サムの息子法」を考える / 松井茂記	岩波書店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判例特別刑法. 第3集 / 高橋則夫	日本評論社	2018	
(海外進出企業のための)外国公務員贈賄規制ハンドブック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グローバルコンプライアンスチーム	商事法務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62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5: ∬263-358 / Joecks, Wolfgang	C.H.Beck	2019	

#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商法講義 / 송옥렬	弘文社	2019	
日本會社法 / 정순현	가꿈	2019	
海事法研究 v.31−1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9	
회사법 / 김정호	法文社	2019	
(M&A)事業譲渡・譲受けの法務 / 三浦亮太	中央経済社	2018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ズ その現下の課題: マティアス・カスパー教授講演集 / Casper, Mattias	中央大学出版部	2018	
(ビジネスツール)手形法・小切手法 / 池島真策	税務経理協会	2018	
(リーガルマインド)手形法・小切手法 / 彌永眞生	有斐閣	2018	
買収ファイナンスの法務 / 大久保涼	中央経済社	2018	
民法とつながる商法総則・商行為法 / 北居功	商事法務	2018	
(法務・税務のすべてがわかる!)事業承継実務全書 / タクトコンサルティング	日本法令	2018	
事業報告記載事項の分析: 2018年6月総会会社の事例分析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9	
商取引法 / 江頭憲治郎	弘文堂	2018	
商取引法講義 / 畠田公明	中央経済社	2018	
(新しい)商法がわかる本:全条文付 / コンデックス情報研究所	成美堂出版	2019	
(新しい)取締役会議事録作成の実務 / 中村直人	商事法務	2018	
一般事業会・銀行をめぐる判例とガバナンス: リスク管理の原点から / 吉井敦子	中央経済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とドイツにおける株式会社法の発展 / 高橋英治	中央経済社	2018	
日本中世市場論: 制度の歴史分析 / 安野眞幸	名古屋大学出版会	2018	
電子取引時代のなりすましと「同一性」外観責任 / 臼井豊	法律文化社	2018	
組織再編における債権者保護: 詐害的会社分割における「詐害性」の考察 / 牧真理子	法律文化社	2018	
招集通知・議案の記載事例: 2019年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9	
現代商法総則・商行為法 / 岡田豊基	中央経済社	2018	
會社法コンメンタール 15: 持分会社(2); § § 614-675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8	
會社法入門 / 前田庸	有斐閣	2018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Bd.1: BGB-Gesellschaft Offene Handelsgesellschaft PartG · EWIV / Gummert, Hans Weipert, Lutz Baumanns, Axel	C. H. Beck	2019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Bd.2: Kommanditgesellschaft GmbH & Co.KG Publikums-KG Stille Gesellschaft / Gummert, Hans Weipert, Lutz Breithaupt, Joachim	C. H. Beck	2019	

###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 군사법원 연감: [2018. 1. ~ 2018. 12.] / 한국.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2019	
(객관식)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 김경중	三潮社	2018	
(경매에 있어서 매매의 타이밍도 중요하고 절세도 중요하지만) 권리분석이 먼저다 / 권형필	지혜와지식	2018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제41·42차 회의 결과보고. 17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등기실무를 위한) 상업등기신청실무 / 신천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8	
민사집행법 / 김홍엽	박영사	2019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 v.2018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9	
연간보고서 v.2018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	
특허법원. 2018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法文社	2018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청구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8	
(わかりやすい)米国民事訴訟の実務 / 関戸麦	商事法務	2018	
プロ弁護士の「勝つ技法」 / 矢部正秋	PHP研究所	2018	
個人再生の實務Q&A120問 / 全國倒産處理弁護士ネットワーク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8	
(米国人弁護士だから見抜けた)日弁連の正体 / Gilbert, Kent Sidney	育鵬社	2018	
民事執行の實務:不動産執行編. 上 / 東京地方裁判所民事第21部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8	
民事執行の實務:不動産執行編。下 / 東京地方裁判所民事第21部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8	
民事執行の實務: 債権執行編. 上 / 東京地方裁判所民事第21部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8	
民事執行の實務: 債権執行編. 下 / 東京地方裁判所民事第21部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8	
弁護士の情報戦略: 「新説」創造力が信用を生み出す / 高井伸夫	民事法研究会	2018	
(新)株式会社の登記実務: 145問と書式解説 / 吉岡誠一	日本加除出版	2018	
日本の裁判がわかる本:弁護士・検察官・裁判官の仕事と役割 / ベリーベスト法律事務所	日本文芸社	2018	

###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소송법 / 김홍엽	박영사	2019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 김현선	백영사	2018	
(よくわかる)民事裁判: 平凡吉訴訟日記 / 山本和彦	有斐閣	2018	
簡裁民事ハンドブック. 1: 通常訴訟編 / 塩谷雅人	民事法研究会	2018	
現代民事手続の法理: 上野泰男先生古稀祝賀論文集 / 上野泰男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法文社	2019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날 문집: 춘천지방법원 2017년, 2018년: 2018. 12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2018	
(나홀로 소송 도우미) 형사소송절차실무: 이론·사례·서식·해설 / 김덕원	진원사	2019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 이선미	사법정책연구원	2019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고소·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 노인수	순눈	2019	
刑事訴訟法 / 伊藤塾	弘文堂	2018	
刑事訴訟法における学説と実務: 初学者のために / 守屋克彦	日本評論社	2018	

#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家族法研究 v.33-1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19	
따로도 같이도 괜찮아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물권법 / 송덕수	박영사	2019	
民法講義 / 지원림	弘文社	2019	
민법강의: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法文社	2019	
민법개정총서. 11: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 민법총칙·물권편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7	
민법의 세계: 이론과 판례 / 양형우	PNC (피앤씨미디어)	2019	
사단(社團) 재단(財團)、비영리、공익법인의 절차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新) 민법강의 / 송덕수	박영사	2019	
채권법각론 / 송덕수	박영사	2019	
판례민법강의 / 양형우	PNC(피엔씨미디어)	2019	
(18歳から考える)家族と法 / 二宮周平	法律文化社	2018	
(Q&A)登記手続と登記簿等の見方 / 山本芳治	アズミ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いますぐ遺言書を書きなさい / 大瀧靖峰	マイナビ出版	2018	
(すぐに役立つ入門図解)相続・遺言・遺産分割の法律と手続き実践文例82: 相続法改正対応! / 松岡慶子	三修社	2018	
(ものがたりでわかる)成年後見制度 / 渡辺哲雄	中日新聞社	2018	
家庭の法と裁判 v.12 /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8	
家庭の法と裁判 v.13 /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8	
家庭の法と裁判 v.14 /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8	
家庭の法と裁判 v.15 /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8	
家庭の法と裁判 v.16 /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8	
家庭の法と裁判 v.17 /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日本加除出版	2018	
工場抵当及び工場財団に関する登記 / 五十嵐徹	日本加除出版	2016	
今日から役立つ民法: スッキリわかる! / 鎌野邦樹	ナツメ社	2018	
金融機関のための相続法改正Q&A / 中村克利	経済法令研究会	2018	
擔保物權法 / 生熊長幸	三省堂	2018	
「登記制度・土地所有権の在り方等に関する研究会」中間取りま とめの概要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民法総則 / 生田敏康	法律文化社	2018	
民法総則 / 原田昌和	日本評論社	2018	
夫の死後、お墓・義父母の問題をスッキリさせる本 / 大﨑美生	日本実業出版社	2018	
敷金・職質・保証人―知らないあなたがはめられる: 自衛のための「法律リテラシー」を備えよ / 鳥賀陽弘道	ワニ・プラス	2018	
社会の変容と民法の課題: 瀬川信久先生・吉田克己先生古稀記念論文集 上 / 瀬川信久 吉田克己 松久三四彦	成文堂	2018	
社会の変容と民法の課題: 瀬川信久先生・吉田克己先生古稀記念論文集 下 / 瀬川信久 吉田克己 松久三四彦	成文堂	2018	
相続と遺言と相続税の法律案内 / 久恒三平	幻冬舎メディアコンサル ティング	2018	
(相続実務が変わる!)相続法改正ガイドブック /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8	
(税理士が知っておきたい)民法〈相続編〉改正Q&A: 改正のポイントをつかむ! / 上西左大信	税務研究会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VII-1-1]: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IPR; Internationales Privatrecht(Einleitung zum IPR) / Looschelders, Dirk Henrich, Dieter Staudinger, Julius von Sturm, Fritz	Sellier-de Gruyter	201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Ⅲ-8]: Sachenrecht ∬1204-1296; SchiffsRG(Pfandrecht) / Noll, Hans-Heinrich Wiegand, Daniel Wiegand, Wolfgang	Sellier-de Gruyter	201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16: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581−606(Pacht, Landpacht, Leihe) / Jeinsen, Ulrich von Reuter, Dieter Schaub, Renate Staudinger, Julius von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Ⅳ-1-3: Familienrecht ∬1353-1362(Wirkungen der Ehe im Allgemeinen) / Voppel, Reinhard Coester, Michael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VII-2-1]: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IPR; Art 7, 9-12, 47, 48 EGBGB: (Internationales Recht der natürlichen Personen und der Rechtsgeschäfte) / Mankowski, Peter Althammer, Christoph Staudinger, Julius von	Sellier-de Gruyter	201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5-5]: Erbrecht∬2265-2302(Gemeinschaftliches Testament, Erbvertrag) / Kanzleiter, Rainer Baldus, Christian	Sellier-de Gruyter	201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V-3: Familienrecht ∬1564-1568; ∬1568a + b(Scheidung der Ehe) / Bar, Christian von Rauscher, Thomas Weinreich, Gerd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4-11]: Familienrecht ∬1684-1717(Elterliche Sorge - Umgangsrecht) / Coester, Michael Dürbeck, Werner Salgo, Ludwig Peschel-Gutzeit, Lore Maria	Sellier-de Gruyter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8-2]: Eckpfeiler des Zivilrechts / Martinek, Michael Beckmann, Roland Michael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2-29]: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826-829; ProdHaftG.(Unerlaubte handlungen 2, produkthaftung) / Oechsler, Jürgen Hager, Johannes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1: Allgemeiner Teil, ∬1-14; Verschollenheitsgesetz: (Einleitung zum BGB und Allgemeiner Teil 1) / Roth, Herbert Habermann, Norbert Honsell, Heinrich Kannowski, Bernd	Sellier-de Gruyter	201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 −10−1: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Leasing (Leasingrecht) / Kaiser, Dagmar Stoffels, Markus	Sellier-de Gruyter	201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VI-1]: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Art 1,2,50-218 EGBGB(Inkrafttreten, Verhaltnis zu anderen Vorschriften, Übergangsvorschriften) / Albrecht, Karl-Dieter Rawert, Peter Staudingers, Julius von	Sellier-de Gruyter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Allgemeiner Teil § § 1-240, ProstG, AGG / Rebmann, Kurt	C.H.Beck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2: Schuldrecht · Allgemeiner Teil I(∬241-310) / Rebmann, Kurt	C.H.Beck	2019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3: Schuldrecht · Allgemeiner Teil II(∬311-432) / Rebmann, Kurt	C.H.Beck	2019	
(The) Law of Secured Credit / Allan, Barry	Thomson Reuters New Zealand Ltd	2016	

###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判例解說 Watch v.24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9	

### • 일반도서

####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図書館サービス概論: ひろがる図書館のサービス / 小黒浩司	ミネルヴァ書房	2018	

#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권익백서 v.2018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9	
國防研究 v.62-1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9	
다차원적 · 통합적 협상모델: '사회적 합의 방법론과 적용'을 중심으로 / 조주은	박영사	2019	
한국아동복지학 v.64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8	
合意ってなに? なぜだいじなの? / Spilsbury, Louise	創元社	2018	

#### • 정기간행물 목록

####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B.F.L(2019.5) 9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30	㈜리걸타임즈	월간
3	사법행정 제60권 제5호(701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4	속보삼일총서 1517/1518/1519/1520/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5	신동아 2019.6.	㈜동아피디에스	월간
6	월간 인사관리 2019.5.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7	이코노미스트 1479,1480,1481,1482,1483,1484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8	주간조선 2555/2556/2557	조선일보사	주간
9	현대문학 2019.5월	㈜현대문학	월간
10	형사법연구 31권 1호	한국형사법학회	계간

####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刑事辯護 N98	現代人文社	계간
2	(旬刊)商事法務 N2194,2195,2196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別冊 商事法務 N441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4	登記情報 59권 제4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5	N.B.L 1143호	商事法務研究會	반월간
6	別冊 N.B.L. N168,169,170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7	COPYRIGHT V59 N696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8	ジュリスト1530호,(4월임시증간)1531호	有斐閣	격주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9	國際法外交雜誌 117권 4호	有斐閣	계간
10	国際私法年報 2018	国際私法学会	연간
11	金融商事判例 N1563,1564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2110,2111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3	勞動法律旬報 1932,1933호	勞動旬報社	순간
14	勞動判例 N1194,1195	産業勞動調査所	반월간
15	登記研究 853호	テイハン	월간
16	文藝春秋 2019.5.	文藝春秋	월간
17	民事訴訟雜誌 V65(2019)	民事訴訟法學會	연간
18	民商法雑誌 155刊立	有斐閣	월간
19	發明 V116 N4	發明協會	월간
20	犯罪學雜誌 85권1호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21	法律のひろば 72권 4호	きょうせい	월간
22	法律時報 91권4호	日本評論社	월간
23	法律判例文獻情報 484호	第一法規	월간
24	法曹時報 71권3호	法曹會	월간
25	法學セミナー 증간 24호,772호	日本評論社	월간
26	法學敎室 463호+별책	有斐閣	월간
27	法學新報 125권 11-12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28	法學研究 92권2호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월간
29	法學志林 116권 1호,2+3호,4호	法政大學法學志林協會	계간
30	法學協會雜誌 136권3호	有斐閣	월간
31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3권1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32	熊本法學 145호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33	銀行法務21 841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34	立教法學 100호	立教法學會(有斐閣)	계간
35	自治研究 95권4호	良書普及會	월간
36	<b>早稻田法學 94권2호</b>	早稻田大學法學會	계간
37	租稅研究 833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38	罪 と 罰 56권2호	日本刑事政策研究會	계간
39	阪大法學 68권6호	大阪大學法學部	격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457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41	判例時報 N2395,2396	判例時報社	순간
42	判例地方自治 N443,444	きょうせい	월간
43	海法會誌 62호	日本海法學會	연간
44	現代消費者法 N42	民事法研究会	계간
45	刑法雜誌 57권3호	日本刑法學會	계간
46	戶籍 966호	テイハン	월간

###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6 N4	AmericanSocietyofComparat iveLaw	계간
2	ArchivFürKriminologie;UnterBesondererBeruecksichtigun Bd243 H3-4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3	Archiv für Pressrecht J50 H2	C. H. Beck	격월간
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6 N4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5	Bundesgesetzblatt: Part 1 & Part 2 2019. I Nr2,5,6,7,8,9,10,12 / I.Nr3,4,5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6	CCZ J12 H1,2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7	Computer und Recht 2019 H4, I2	Dr.Otto Schmidt	월간
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127 H5	Gieseking	월간
9	Der Spiegel 2019 N14,15,16,17,18,19,20	Spiegel	주간
10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9 N1,2(2018)	BerkeleyLawUniversityofCal ifornia,Berkeley	반년간
11	Deutsche Richter Zeitung J97 H4,5	Carl Heymanns	월간
1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4 H7,8	Otto Schmidt	격주간
13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2 N8	Kohlhammer	반월간
14	Die Praxis 2019H4	Helbing & Lichtenhahn	월간
15	DISCOVER 2019 5월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16	Droit Social 2019 N1,2,3,4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17	Entertainment Law Review V30 I3	Sweet & Mawell	연8회
18	Europäische Grundrecht-Zeitschrift J46 H1-6	N.P. Engel	반월간
19	Europarecht J54 H1	Nomos-Verl	격월간
20	European Law Review V44 N2	Sweet & Mawell	격월간
21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0 H6,7,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2	Familie Und Recht J30 H4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3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1 N4,5	VCH	월간	
24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6 H3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25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1 H1,2,3,4,5,6,7  Verlag C. H. Beck oHG			
26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19 H3,4	g 2019 H3,4 Stollfuß		
27	Jura : Juristische Ausbildung Bd41 H4	Ausbildung Bd41 H4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8	Juristische Rundschau 2019 H1,2,3,4	Walter de Gruyter	월간	
29	Juristische Schulung J59 H5	C.H. Beck	월간	
3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9 H2	C.H.Beck	월간	
31	Kritische Justiz J52 H1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3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J101 H4	Nomos	계간	
33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9 N1-2,3,4,5,11,12,13,14,14SUPPLE,15	Juris-Classeur	주간	
34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9 N1-2,3,4,5,11,12,14,15	JCP	주간	
35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9 N1,2,3,4,5,10,11,12,14,15	JCP	<b>주</b> 간	
36	L'actual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 (AJDA) 2019 N10,11,12,13,14	Dalloz	주간	
37	Le Droit Ouvrier N846,848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38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8 INDEX, 2019 P3,4	LLP	연10회	
39	Lloyd'sMaritimeandcommercial Law Quarterly PART3. AUGUST 2018	LLP	계간	
40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6,7,8	Otto Schmidt	반월간	
4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2 H14,15,16,17,18,19 Spezial7,8,9	C. H. Beck	주간	
42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6 H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3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Nstz) J38 index, J39 H1,2,3,4	C. H. Beck	월간	
44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8 H7,8,9	C. H. Beck	월간	

63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45	Nj Neue Justiz J73 H4	Nomos	월간	
46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2 H9,10,11,12,13,14	Verlag C H Beck oHG		
47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39 H3	Gieseking Verlag	격월간	
48	Public law 2019 April	Sweet & Maxwell	계간	
49	Recht Der Arbeit J71 index, J72 H1 Verlag C. H. Beck oHG			
50	Recueil Le Dalloz N10,11,12,13,14 (2019)	(2019) Dalloz		
51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9 N1	Dalloz	계간	
52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9.1/2/3/4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53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17 (2019.3)	PUF	계간	
54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9 N1	Editions A. Pedone	계간	
55	RW(Rechtswissenschaft startet) J9 H4	Verlagsgesellschaft mbH & co.KG	계간	
56	The Economist 3/30, 4/6, 4/13, 4/20, 4/27, 5/4, 5/11	The Economist Group	주간	
5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9 N4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연3회	
58	TIME 4.15/4.22/4.29+5.6/5.13/5.20.	Time Asia	주간	
59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J51 H4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60	Versicherungsrecht J69 index, J70 H1,2,3,4,5,6,7,8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61	WM (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3 N1,11,12,13,14,14SUP,15,1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62	Wuw (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69 H4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63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 RZ) J66 H8,9	Gieseking	반월간	
64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34 H1	C.F. Müller	계간	
65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ZWeR) J16 index, J17 H1	RWS Verlag	연5회	
6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40 H11,12,13,14,15 EWIR J35 6,7	RWS	주간	